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377-14



NO CO 2026



2026년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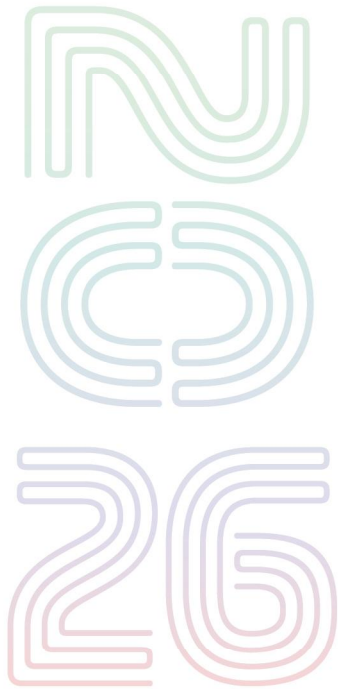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2026년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제 1 편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개요	I.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개요	2
	1. 정 의	2
	2. 가입대상	2
	3. 관련 근거	2
	4. 기관별 역할	3
	II. 업무 흐름도	4
	(참고) 안내 사업 목록	6

제 2 편



가입 신청	I. 가입 구분	14
	1. 신청간주	14
	2. 동시신청	15
	3. 단독신청	16
	(참고) 가입 구분별 업무 요약	17
	II. 신청 절차	18
	1. 온라인 신청	18
	2. 방문 신청	18
	3. 안내사항	18

CONTENTS

제 3 편



조 사

I. 자료 조사 및 예측	22
1. 개요	22
2. 조사의 시기	22
3. 조사 내용	22
4. 가구 구성	23
5. 수급 가능성 예측	23

제 4 편



안 내

I. 수급 가능성 안내	26
1. 안내 개요	26
2. 안내 내용	26
3. 안내 주기	29

제 5 편



사후관리

I. 사각지대 발굴 연계	32
1. 취약계층 상담 및 신청 연계	32
2. 업무 절차	32
II. 가입 정보 변경 및 종료(중지)	33
1. 가입자 정보 변경	33
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갱신 및 종료(중지)	33
3. 정보 폐기	34
(참고) 중지 및 갱신 안내 문자 예	35
(참고) 중지 및 갱신 안내 이메일 예	36



서 식

1. 관련 서식	40
2. 관련 법령	51
3. FAQ	56



N
CJ 2026년
26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제  편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개요

I.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개요

II. 업무 흐름도

I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개요

1 정의

-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21.9.~)

※ (가입대상) 전 국민, (안내사업) '26.1월 기준 163종(중앙부처 84종, 지자체 79종)

2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자 포함

3 관련 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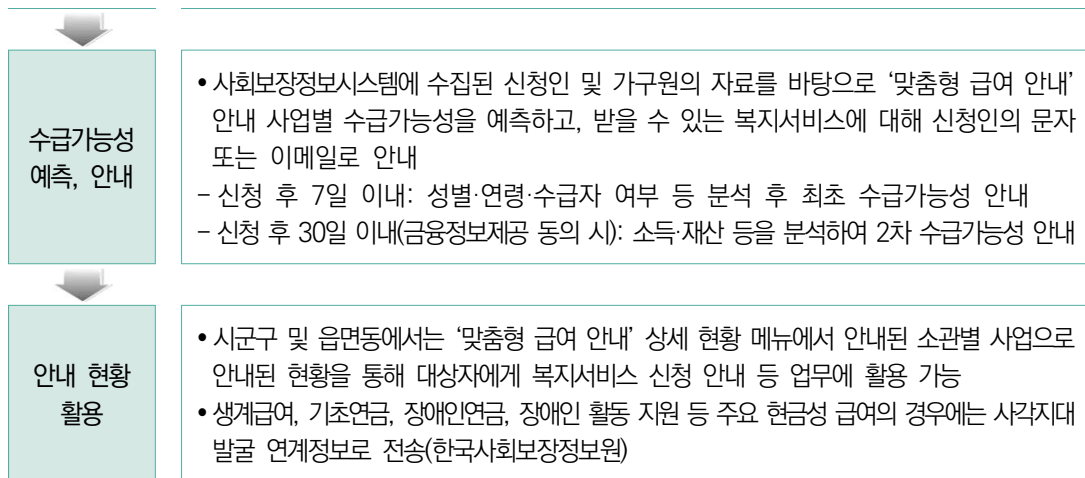
4 기관별 역할

기관	담당업무(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총괄
시·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제도 운영 및 지원 총괄 - 제도 안내 사업 확대, 제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제도 홍보 및 활성화 등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 안내 대상 사업 관리
시·군·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제도 운영 담당 및 지원 총괄 - 제도 안내 사업 확대, 제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제도 홍보 및 활성화 등 - 시·군·구 가입자 및 수급가능성 안내, 수혜이력 등 현황 관리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 안내 대상 사업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제도 운영 담당 및 지원 -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가입 거부 신청,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처리 - 읍·면·동 가입자 및 수급가능성 안내, 수혜 이력 등 현황 관리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및 상담 - 수급가능성 안내 및 가입자 현황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사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운영 지원 - 제도 운영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도 운영 개선 지원, 가입자 및 안내 현황 등 전반의 통계 관리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홍보 지원 - 안내 사업 확대 및 현행화, 안내 중지 등 처리

II

업무 흐름도

단 계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항 확인 * 온라인 가입의 경우는 '단독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안내 * 가입 구분(신청간주, 동시신청, 단독가입)하여 안내
가입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급여 안내'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가입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처리 -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 및 안내 수단 선택 - 주민세대정보 조회된 가구원 정보 확인 - 신청인 및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처리(동의, 미동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서류 없으나,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유의사항 제8,9호 안내 (동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의 선택적 동의 제8호에 동의 체크 (단독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는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가입신청서 등록·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신청 완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간주), 2. (동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단독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및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선택) 제출
가입 처리	(신청간주, 동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접수 화면 하단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탭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등 가입 처리 - 신청간주의 경우 가입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인으로부터 거부확인서를 제출받아 등록 (단독가입)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메뉴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가구원으로 입력하고,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하여 구성 * 온라인 단독가입의 경우 조회된 주민세대정보로 가입되며 신청인이 가구원 변동 등의 사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하여 변경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신청인과 가구원의 성별·연령·수급자 여부·소득·재산 등 정보를 수집 - 이후, 가구원의 출산·연령·가구원 변동·수급 자격 등 변동 정보 수집(매월) 	



참고 안내 사업 목록(163개)

※ 매년 보장기관 신청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고, 폐기 등 안내 대상 사업은 상시 변경될 수 있음

번호	사업명	보장기관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보건복지부
6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7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8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돌봄 필요 중장년)	보건복지부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보건복지부
1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2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13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보건복지부
17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18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1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보건복지부
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1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2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24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보건복지부
2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번호	사업명	소관기관
2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7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보건복지부
28	의료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29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30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3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32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33	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5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36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37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3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39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40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41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42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43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44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45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46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부
47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48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부
49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50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교육부
51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52	시간제보육	교육부
53	장애아보육료지원	교육부
54	다문화보육료지원	교육부
55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번호	사업명	소관기관
56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57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5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고용노동부
59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6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6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6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성평등가족부
6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성평등가족부
6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65	아이돌봄서비스	성평등가족부
66	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과학문화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7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71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7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7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질병관리청
7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75	가스요금할인	산업통상부
76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77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78	환경보건이용권	기후에너지환경부
79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보훈부
80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81	TV수신료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2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3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
8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85	서울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번호	사업명	소관기관
86	서울런(Seoul- Learn) 교육 서비스	서울특별시
87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8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특별시
89	서울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서울특별시
90	서울형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9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특별시
9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9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94	강종강충 성장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95	아장아장 관악첫돌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96	응애응애 관악탄생축하함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97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부산광역시
98	부산형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광역시
99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100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101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102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103	대구형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104	대구형 다자녀가정 아이조아카드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105	인천형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106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
107	대전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전광역시
108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전광역시
109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대전광역시
110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울산광역시
111	울산형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울산광역시
112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
113	중증장애인 월동비	세종특별자치시
114	효행장려금	세종특별자치시
115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번호	사업명	소관기관
116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117	노인급식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118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
119	용인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경기도 용인시
120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 용인시
12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오산시
122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경기도 화성시
123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124	강릉시 저소득 어르신 아·미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25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26	홍천군 효행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127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28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29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남도
130	충남형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충청남도
131	충남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132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충청남도
133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134	충남형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충청남도
135	충남형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136	충남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충청남도
137	충남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138	계룡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충청남도 계룡시
139	계룡시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계룡시
140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충청북도 음성군
141	전북형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142	전북형 장애인 신문보급	전북특별자치도
143	전북형 학기중야동급식지원	전북특별자치도
144	전북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전북특별자치도
145	전북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번호	사업명	소관기관
146	전북형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147	전북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148	전북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149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전북특별자치도
150	전북형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151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전라남도
152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라남도
153	전라남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전라남도
154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전라남도
155	청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전라남도 보성군
156	50세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보성군
157	인플루엔자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	전라남도 보성군
158	광양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광양시
159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160	경남형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161	제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62	제주형 출산여성 한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63	제주형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제주특별자치도



N
CJ 2026년
맞춤형 급여 안내
26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제 2 편

가입 신청

- I. 가입 구분
- II. 신청 절차

I 가입 구분

1 신청간주

- (정의)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로 간주하여 처리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이용 사업임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안내사항)
 - 신청간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유의사항 제8호, 제9호에 고지하고 있는 사항임

유의사항		확인 (✓체크)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p>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

-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간주 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도 활용됨

2 동시신청

- (정의)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이용 사업을 대상으로 동시신청 대상 사회보장급여로 확대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안내사항)
 - 동시신청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선택적 동의 제8호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선택적 동의		동 의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동시신청 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도 활용됨

3 단독신청

- (정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을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직접 가입 가능
- (제출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안내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신청서' 작성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관련 신청인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이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더 많은 사업에 대한 수급가능성 안내를 위하여 관련 취지 설명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안내

참고 가입 구분별 업무 요약

구분	신청간주	동시신청	단독신청
신청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급여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립,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급여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가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 가입 거부 의사 없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제출 시 미가입 가능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1의3호] - (추가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선택),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간주 대상 급여 신청 시 자동 가입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거부절차는 동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 신청서 '선택적 동의' 제8호에 맞춤형 급여 안내 리에 동의 표시 - (추가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선택),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동시신청 대상 급여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선택적 동의' 제8호에 맞춤형 급여 안내 리에 동의 표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 (추가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선택),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
조사	가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구성된 가구로 반영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구성된 가구로 반영	• 주민세대정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해 수정 반영 가능
	가구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반영) 신청인·가구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시 자동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의 단순 전출입은 가구 구성의 변동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음 • (수동반영) 신청인의 신청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활용하여 보완 가능 		
예측, 안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총 163종 (중앙부처 사업 84개, 지자체 사업 79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안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후 7일 이내: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 분석 후 최초 수급가능성 안내 - 신청 후 30일 이내(금융정보제공 동의 시):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2차 수급가능성 안내 • (수시안내) 가구의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및 자격 변동 발생 시 수급가능성 안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 시 선택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급 가능 복지서비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가입자인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메뉴에서 내용 확인 가능 		

II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앱 접속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온라인 가입 신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동의) 후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안내 수단(문자 또는 이메일) 선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선택동의) 사항 선택
 - 신청인과 함께 소속된 가구원 내역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선택동의) 사항 선택 후 가입 신청 완료
- **(접수 및 가입 처리)** 가입 신청 완료 동시에 접수 처리되며, 당일 가입 완료
 - * 주말·공휴일에도 가입 완료되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자 조회 가능

2 방문 신청

-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가입 신청
 - * 신청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접수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즉시 가입 처리
- **(접수 및 가입 처리)**
 - (신청간주, 동시신청) 해당 사회보장급여 담당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처리
 - * 사회보장급여 신청 처리 상태와 별개로 시스템 등록 이후 완료(종료, 종결) 처리하여야 가입이 완료됨
 - (단독가입) 복지업무 담당자가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신청서 등 제출받아 가입 처리
 - * 가입신청서 접수, 시스템 등록 이후 완료(종료, 종결) 처리하여야 가입이 완료됨

3 안내 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급 가능성 안내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아니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예측해 안내하는 것임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안내받은 수급 가능 사회보장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상 급여를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예측하여 안내한 사회보장급여는 해당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자료 등을 통해 전산으로 예측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 관련 사항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안내 대상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이중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급 가능성 안내가 불가함을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이 직접 동의 처리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음을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수급 가능성 예측을 위해 금융기관 등(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게 되고, 제공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소지로 우편 통지됨을 안내
- 금융정보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통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 거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복지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거부 처리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거부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종류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은 매년 보장기관의 신청을 받아 확대하고 있음을 안내
 - * '23년 80종, '24년 127종, '25년 163종(36개 사업 확대)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방법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하며, 신청인이 안내 방법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함을 안내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처리
 - * '26년에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추가하여 안내 수단을 확대할 예정임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급 가능 안내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판단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는 신청인에게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시기**

- 최초 가입 이후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을 통해 수급 가능성 예측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는 신청 후 7일 이내, 금융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포함해 수급 가능성 예측이 가능한 급여는 30일 이내에 안내함

* 단, 일수를 신청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적자료 또는 금융기관 자료의 재회신 및 지연 회신 등으로 인해 시일 소요 가능

- 최초 안내 이후에는 가구의 출산, 연령 도래, 수급 자격변동 등 주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 안내될 수 있음

• **가구원 공적 자료 등 조회에 관하여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가구 단위로 수급 가능성 예측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 및 가구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함(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등 준용)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근로 능력 및 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이력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급 가능성을 신뢰도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에 대하여 정확히여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비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I 자료 조사 및 예측

1 개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수급 가능성 예측을 위한 위한 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③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조사의 시기

- (최초 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로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찾기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조사
- (수시 조사) 출산, 연령도래, 가구원변동, 수급 자격 등 주요 변동사항을 주기적(월별)으로 파악하여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찾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3 조사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 범위와 방법은 동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에 따라 수급 가능성 예측을 위해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
 -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가구 구성

- **(범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인과 그 배우자, 신청인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본 구성)** 신청인의 주민세대정보를 조회하여 자동 등록 조회되어 등록
 - 신청인과 동일 주소지의 형제·자매 및 민법상 가족이 아닌 자는 제외하여야 함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같은 주소지가 아닌 사유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가구원 추가, 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 분리 등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탈퇴 처리 후 재가입 조치
 - ※ (가구 구성 보완 예) ①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 ②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 ③ 신청간주 대상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의 신청에 따라 가구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 ④ 자녀 결혼으로 가구 구성에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 가구원에 포함 가능

5 수급 가능성 예측

- **(정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별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수급 가능성 예측식을 적용하고, 조사된 정보를 매칭하여 수급 가능성 예측 결과 생성
 - ※ 수급 가능성 예측식 예)
 - (선정기준) 만연령 35세부터 69세이하인 자 중에서 가구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재산합산 금액이 4억원 이하인 가구
 - (예측식) 만연령 35 BETWEEN 69 + 가구월평균소득금액 <= 기준중위소득 60% + 가구재산합산금액 <= 400,000,000



N
CJ 2026년
26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안 내

I. 수급 가능성 안내

I

수급 가능성 안내

1 안내 개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가능

2 안내 내용

- 휴대전화 문자

< 7일 이내 안내문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서비스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나와 가족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복지멤버십 1차 알림입니다.

홍길동님과 가구원의 성별, 연령 등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된 서비스는 귀하와 가구원의 현재 정보를 확인한 결과이며, 신청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는 연중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566-0313(전담콜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0일 이내 안내문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서비스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나와 가족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복지멤버십 2차 알림입니다.

홍길동님과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정보 포함) 등 정보를 확인한 결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된 서비스는 귀하와 가구원의 현재 정보를 확인한 결과이며, 신청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는 연중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566-0313(전담콜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7일 이내 안내문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결과 안내문

홍길동 님의 2025년 00월 00일자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을 감사드립니다.

귀하 및 가구원께서 현재 받고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성별, 연령 등을 기반으로 2025년 00월 00일자 기준 신청 가능·상당 필요한 급여·서비스 0건 (확인하실 서비스 0건)**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 가능한 서비스(희망 시 현재 수급자격·가구특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번	급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접수처	문의처
1	가정양육수당 지원	...	현금	개인	읍면동	전담콜센터 (15XX-XXXX)
...	급여명3		바우처	개인

■ 상담이 필요한 서비스(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연번	급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접수처	문의처
1	...					
...	...					

■ 추가 확인하실 서비스(신청 기간이 한시적이거나, 수급 자격 외 사업별 심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연번	분류	급여·서비스(문의처)
1	생활	예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소)
...

☞ 급여·서비스 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 -

1. 안내된 내용은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동의를 받은 자료만을 이용하여 모의계산한 결과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된 내용의 정확성 및 안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는 시스템이 확인한 공적자료만 이용하여 신청가구에 적합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로, 해당 **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결정 또는 보장해드리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에 따라 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본 안내는 **계좌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 30일 이내 안내문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결과 안내문

홍길동 님의 2025년 00월 00일자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을 감사드립니다.

귀하 및 가구원께서 현재 받고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성별, 연령 등을 기반으로 2025년 00월 00일자 기준 신청 가능·상당 필요한 급여·서비스 0건 (확인하실 서비스 0건)**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 가능한 서비스(희망 시 현재 수급자격·가구특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번	급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접수처	문의처
1	가정양육수당 지원	...	현금	개인	읍면동	전담콜센터 (15XX-XXXX)
...	급여명3		바우처	개인

■ 상당이 필요한 서비스(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연번	급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접수처	문의처
1	...					
...	...					

■ 추가 확인하실 서비스(신청 기간이 한시적이거나, 수급 자격 외 사업별 심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연번	분류	급여·서비스(문의처)
1	생활	예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소)
...

☞ 급여·서비스 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 -

- 안내된 내용은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동의를 받은 자료만을 이용하여 모의계산한 결과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된 내용의 정확성 및 안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시스템이 확인한 공적자료만 이용하여 신청가구에 적합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로, 해당 **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결정 또는 보장해드리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에 따라 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계좌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3 안내 주기

- (최초안내)

- 신청 후 7일 이내 : 신청인의 연령, 성별, 수급 자격 여부 등을 통해 수급 가능성 안내
- 신청 후 30일 이내 :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포함하여 수급 가능한 안내
 - *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함
 - ※ 일수 산정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적자료 또는 금융기관 자료의 재회신 및 지연 회신 등으로 인해 시일 소요 가능

- (수시안내) 가구원의 주요 변동(출산, 연령도래, 사망, 수급 자격 등)이 발생한 경우, 변동 사항에 따른 급여를 안내

- * 수시안내 전 30일 이내 최초판정 결과를 통보한 대상에 대해서는 안내 제외



N
CJ 2026년
26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제 15 편

사후관리

- I. 사각지대 발굴 연계
- II. 가입 정보 변경 및 종료(중지)

I

사각지대 발굴 연계

1 취약계층 상담 및 신청 연계

- (취약계층) 65세 이상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중 현금성 급여*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4종)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판정결과를 안내하였으나, 안내 이후 일정 기간(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
 - * 선정기준선이 낮아, 미수급시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선정
- (관리방안)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선정에 활용
- (신청연계) 발굴대상자 중 맞춤형급여 안내문에 표기된 사업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대리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계 또는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 후 대리신청 가능

2 업무 절차

단 계	업무 내용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모바일(복지로 앱 등), 전자우편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지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 제공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관할 주소지의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
급여 상담 및 신청 연계	•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 안내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 현금성 급여를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된 이후 일정기간(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 예정으로 필요 시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등 추진

II

가입 정보 변경 및 종료(중지)

1 가입자 정보 변경

- 신청인 및 가구구성원의 ①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 ② 안내방법 변경(알림 정지 등), ③ 금융정보제공 동의 철회 가능
- (개인정보변경 및 안내방법 변경)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제출
 - 알림 중지 시에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가입상태 및 수급가능성 판정은 유지되며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는 '복지로' 통해 확인 가능 (가구원 전체 알림 정지의 경우에도 동일)
- (금융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중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 제출
 - * [부록1] 관련 서식 참조
 - 이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동의만 철회되는 것이며, 급여신청 또는 기수급 급여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유지

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갱신 및 종료(중지)

- (유효기간 갱신)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 2회의 갱신 거부 의사 확인*
 - * 거부 의사 확인 안내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유효기간 갱신에 거부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자동연장되며, 갱신에 거부하는 경우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중지신청
- (자동중지) 신청인 및 가구원의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시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중지되며, 가구구성원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종료됨을 알리고 재신청 안내
- (중지 신청)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중지(=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복지로)에서 중지를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간기관을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중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제출
 - * 민간기관에서 중지신청서 '신청지원 요청서'도 같이 제출 필요
 - 가구원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탈퇴) 사실을 통보

- 중지 신청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구원은 중지신청 불가능(알림 정지만 가능)
-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가구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이혼 시에는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재가입 가능

- **(알림 변경(취소) 신청)**

- 안내받을 방법을 변경하거나 알림 수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변경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제출
- 알림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가입 및 수급가능성 판정은 유지되며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는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확인 가능

3 정보 폐기

- 유효기간 갱신 미동의, 신청인 자격상실, 중지신청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종료 시, 알림정보 및 안내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기간 경과 시 관련 정보를 파기

참고 중지 및 갱신 안내 문자 예

① 중지신청 결과 안내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신청 결과 안내

홍길동 님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 신청에 따라 홍길동 님과 가구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 처리가 2025년 0월 0일 완료되었습니다.

〈공적자료 화신에 따른 자동 중지 안내문 발송시 달라지는 문구〉_나머지는 동일

홍길동 님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홍길동 님과 가구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2025년 0월 0일 중지되었습니다.

추후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안내는 계좌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파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XX-XXXX(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

② 갱신 안내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갱신 알림

홍길동 님이 신청하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유효기간(5년)이 2030년 0월 0일 만료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중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료일 전까지 중지신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5년 갱신됩니다.

문의 : 15XX-XXXX(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

참고 중지 및 갱신 안내 이메일 예

- 중지신청 결과 안내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 신청 결과 안내문

홍길동 님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중지신청에 따라 홍길동 님과 가구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안내가 0000년 00월 00일 중지처리 되었습니다.

〈 유 의 사 항 〉

1. 추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안내는 계좌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 -

• 갱신 안내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갱신 안내문

홍길동 님이 신청하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유효기간(5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2025년 x월 x일 / 만료일 : 2030년 x월 x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중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중지를 신청하실 경우, 본인 및 가구원 모두 중지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안내는 계좌번호 요구 및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 -



N
CJ 2026년
26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부록 1. 관련 서식

부록 2. 관련 법령

부록 3. FAQ



부록 1. 관련 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1.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7.4.>

3.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9. 1.>

4.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9. 1.>

5. 맞춤형 급여 안내 중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

6.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_____)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⁷⁾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4) 해당자에 한함
-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기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⁹⁾ <input type="checkbox"/> 기타 ¹⁰⁾)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아동 ·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U+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확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자산형성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¹¹⁾ ()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input type="checkbox"/>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요금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input type="checkbox"/>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_____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사항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호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p>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 의 (√ 체크)
<p>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

선택적 동의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의 (√ 체크)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교육급여·교육비지원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부모급여	4.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장애연금	5.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연금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서비스연계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7.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공동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6.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유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 면 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선행성,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신 청 기 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³⁾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9.1.>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지원 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가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구원별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의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험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보장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맞춤형 급여 안내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하여 안내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보장기관의 장 귀하

안내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 모두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한 이후 다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맞춤형 급여 안내 [] 중지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

맞춤형 급여 안내 [] 중지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상기 본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신청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의 중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1.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에 대한 안내가 중지되어 가구원 모두 더 이상의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맞춤형 급여 안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철회의 경우, 수급하고 있는 급여서비스 또는 신청 중인 급여서비스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만을 철회하는 신청입니다.
3.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급 가능한 급여서비스 안내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록 2.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 2. 3., 2020. 12. 29.>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7호, 2025. 9. 16., 타법개정]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31.]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0. 8., 2021. 8. 31.>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1. 8. 31.>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

[중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1. 9. 1.>]

부록 3. FAQ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신규 확대 절차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신규 확대는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임
 - * 2월 및 8월경 수요조사 안내를 시작으로, 보장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의 분석, 수급 가능 예측식 개발, 시스템 반영 및 확정 통보 등 절차로 실시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설 또는 기존 사업 중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지역민에게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 안내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내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중 안내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소관 보장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안내 사업 대상으로는 ①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② 수급 대상자가 민감한 대상자가 아니며, ③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함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의 안내 중지 절차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이 당해연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안내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3,3144)으로 유선 통보 후 공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중지 요청하여야 함
 - * 요청 시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함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현행화 절차는?

- 보장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연도 추진 계획 수립 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별 수급 가능성 예측식 반영과 안내 일정을 조정해야 함
- 안내 사업의 예측식 및 안내 일정 반영을 위하여 매년 2월 경 보장기관으로 사업별 선정기준 및 추진 일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보장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현황 조회 방법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관련 업무는 다음 권한을 가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가 활용 가능

(시군구) 결혼중개업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기초연금담당, 기타생활지원담당, 긴급지원담당, 노인담당, 노인일자리서비스담당, 드림스타트담당, 바우처담당, 보건소담당, 비공무원사례관리(이관콜)담당, 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비공무원현장슈퍼바이저, 사례관리(이관콜)담당, 사례관리담당, 사례관리팀장, 시설법인담당, 아동청소년담당, 에너지바우처담당, 여성가족담당, 영유아보육담당, 의료급여담당, 의사상자담당, 자료정비담당, 자활직업상담담당, 장애인담당, 조사담당, 지자체지원담당, 한부모담당

(읍면동) 기초생활보장담당, 기초연금담당, 노인담당, 노인맞춤돌봄담당, 맞춤형복지담당, 바우처담당, 보건소담당, 비공무원단순업무보조담당, 비공무원맞춤형복지담당, 비공무원주요업무보조담당, 비공무원현장슈퍼바이저, 사례관리담당, 사례관리팀장, 아동청소년담당, 영유아보육담당, 의료급여담당, 자원관리담당, 지자체지원담당, 한부모담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정책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통합업무’ > ‘맞춤형급여안내’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 ‘맞춤형급여안내 가입현황’ 메뉴에서 관내 가입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신규 가입 신청 및 가입자 변경/중지 신청에 대한 처리도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메뉴에서 각 기능별 처리 가능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현황 조회 방법은?

- ‘통합업무’ > ‘맞춤형급여안내’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조회’ 메뉴에서 관내 가입자에 대한 수급가능성 판정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을 통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신청지원이 가능한지?

- 종합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원을 받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③ (생략)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지원 대상 사회보장급여별 지원기관

기관 유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노인 복지관	○	○					○
장애인 복지관			○	○	○	○	○
종합사회 복지관	○	○	○	○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절차(복지 분야)〉

단 계	업 무 내 용	담 당
서비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지원기관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기관 이용자 및 관할 거주자 중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서류,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지원 기관
1)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지원 요청자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신청지원기관에 제출 	신청지원 요청자
2) 신청서 신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지원 업무담당자는 신청지원 요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 스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캔한 파일의 상태(크기, 화질)를 확인하여 재요청이 없도록 유의 신청지원 기관은 지자체에서의 신청처리 완료* 시 원본 서류 및 스캔파일을 지체없이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 지자체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지원 기관
3) 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급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보완 또는 접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접수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통보 - 관할 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전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 시스템 알림으로 신청지원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때는 해당 건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자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신청지원기관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유 및 항목을 충분히 안내하고 보완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지원 기관
4) 급여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신청서 접수 후 조사 및 결정, 급여 지급 단계 등은 일반 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원기관 업무담당자는 급여 신청 처리 현황 및 결과는 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급여의 보장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추가 상담은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수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지원 기관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황(2025.12월 기준)〉

연번	사도	사·군·구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4)	강서구	서울시강서구재가노인복지기관
2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3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재가노인복지기관
4		금천구 (4)	금천노인종합복지관
5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6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7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8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9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10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11		양천구 (2)	목동종합사회복지관
12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13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14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5	부산광역시 (4)	사상구 (2)	사상구노인복지관
16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7		서구	서구장애인복지관
18		수영구	수영구장애인복지관
19	대구광역시 (8)	달성군 (2)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20			달성군장애인복지관
21		서구 (4)	내당노인복지관
22			비원노인복지관
23			서구노인복지관
24			인동촌노인복지관
25		수성구	범물노인복지관(범물실버복지센터)
26		중구	대구중구노인복지관
27	인천광역시 (5)	동구 (3)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8			인천광역시의료원
29			창영종합사회복지관
30		미추홀구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1		중구	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2	광주광역시 (2)	남구 (2)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33			양지종합사회복지관
34	대전광역시 (10)	동구 (5)	대동종합사회복지관
35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연번	사도	시·군·구	기 관 명		
36			생명종합복지관		
37			용운종합사회복지관		
38			판암사회복지관		
39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40			중구 (4)	중촌사회복지관	
41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42				보문종합사회복지관	
43				성락종합사회복지관	
4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45			(2)	-	세종종합사회복지관
46			경기도 (5)	구리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47				(2)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48				안성시	안성시노인복지관
49	이천시	이천시청미노인복지관			
50	평택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51	충청북도 (4)	음성군	음성군장애인복지관		
52		청주시 (3)	청주의료원		
53			청주종합사회복지관		
54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55	충청남도 (2)	천안시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56	(2)	(2)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5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마음건강복지관		
5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종합사회복지관		
59	경상북도 (7)	경산시 (4)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60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61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62			경산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63		문경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64		(2)	흥덕종합사회복지관		
65		성주군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66	경상남도 (6)	김해시 (3)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67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68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69		진주시 (3)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70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7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업무지침

2026년 1월 발행

발행처: 보건복지부

본 간행물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044-202-3143,314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산조사부 ☎ 02-6360-4897,4894

(일반상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 1566-0313